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한국약학교육협회의간의

협력 협정서



한국약학교육협회
Korean Association of Pharmacy Education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사)한국약학교육협회(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대한민국 마약류퇴치를 위한 범국가적 연구 기반·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약류 중독예방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술·연구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협정서는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마약퇴치 연구관련 분야의 협력 및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본원칙) 양 기관은 상호협력에 있어서 평등, 상호주의 및 호혜의 원칙을 기초로 상대기관의 제반규정을 존중한다.

제 3 조 (협력분야) 본 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에 협력하기로 한다.

1. 약학대학 6년제 교육관련 실무·실습 지원
2. 연구협력 및 교육훈련
3. 학술교류(학술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
4. 인력 및 정보교류
5. 연구시설 등 인프라의 공동 활용
6. 기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되는 분야

제 4 조 (연구협력) 양 기관은 협력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공동연구, 교육훈련 및 학술교류 등의 방법으로 협력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가. 마약류퇴치 및 중독예방 연구
- 나. 기타 양 기관의 공동 관심분야

제 5 조 (결과의 활용) 공동연구에 따른 연구내용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6 조 (비밀보장) 양 기관은 본 협정에 의거한 학술 및 연구협력 과정을 통하여 지득한 상대 기관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와 유출방지를 위해 상호노력하며, 비공개 연구결과에 대하여 계약 해지 시까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양 기관의 장이 최초 서명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해지일 2개월 전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협정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재 협정된 것으로 한다.

제 8 조 (기타) 이 협정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과 협정서의 조문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에 공동 서명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48길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전 영 구

이사장 이 범 진

 (서명)

 (서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강남을지병원

마약류 및 남용약물의 수요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강남을지병원(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남용약물 중독자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마약류 및 남용약물 중독자(사범 포함)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활동에 성실한 자세로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협력내용】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1. 마약류 및 남용약물 중독자(사범 포함) 치료재활 및 사후관리를 통한 중독자 사회복귀사업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입소자 관리와 관련한 기술적 지원에 협력한다.

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실시하는 다양한 마약류 사범 재활교육에 협력한다.
4. 강남을지병원을 적극 홍보하며, 강남을지병원에 우선적으로 의뢰하여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받도록 협력한다.
5. 마약류 및 약물남용 중독자(사범)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관련 연계(의뢰 포함) 및 연구 등 중독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 서로 협력한다.

제 3조 【협력지원】 양 기관은 이를 계기로 마약류 및 남용약물 중독자 치료재활 및 사후관리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마약없는 건강한 사회 구현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2014년 10월 1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전 영 구

Chun

강남을지병원

원장 조 성 남

조 성 남

산학협력 협약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삼육대학교는 대학의 인재육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으로 대학경영혁신에 크게 기여한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 하고 상호 협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대학·대학생에 대한 건강과학특성화사업의 사회적 문제인 중독 예방 사업과 이에 관련된 업무를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 및 대학생의 취업·육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내용)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삼육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협력한다.

1. 중독예방분야 인재개발, 산업인력개발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2. 중독예방분야와 관련된 기술 및 기법개발과 관련된 사항
3. 중독예방분야의 교육훈련 및 컨설팅 사업의 상호협력
4. 중독전문가 양성 및 보급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5. 중독전문가 인증기관으로서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상호협력
6. 기타 교육 및 중독예방관련 분야 국책사업과 관련된 프로젝트 공동 추진 및 개발

제3조 (협약기간) 본 협약서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당사자 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기타)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대표가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10월 30일



이 사 장 전 영 구



삼육대학교
SAHMYOOK UNIVERSITY

총 장 김 상 래

상 호 협 력 의 향 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심양사범대학교는 다음과 같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한다.

1. 인재개발 및 양성을 위한 교육 연수
2. 마약류 예방 홍보 활동 상호 협력
3. 학술 교류(학술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
4. 인력 및 정보 교류
5. 중독 예방분야와 관련된 내용 및 프로그램 교류
6. 기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되는 분야



2014년 11월 11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심양사범대학교

총장

상호협력의향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심양사범대학교는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제 1 조(목적)

본 의향서는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성공적인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호 협력 의사를 명문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교육 사업을 통하여 상호 공동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3 조(신의 성실)

양 기관은 신의를 바탕으로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제 4 조(각 당사자의 협력 분야)

본 협의에 의하여 양 기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인재개발 및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2. 마약류예방 홍보활동 상호협력
3. 학술교류(학술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
4. 인력 및 정보교류
5. 중독예방분야와 관련된 내용 및 프로그램 교류
6. 기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되는 분야

제 5 조(유효기간)

본 의향서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특별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3년간씩 연장된다.

제 6 조(비밀보호)

양 기관은 본 의향서와 관련하여 상호 교류하는 자료 및 정보를 본 의향서가 정하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제 3 자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제 7 조(비용)

본 의향서와 관련하여 유효기간 동안 소요된 당사자의 제반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대방은 그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제 8 조(의향서의 변경)

양 기관은 상호 업무제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본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효력 발생일)

본 의향서의 효력은 양 기관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 2 조(의향서의 보관)

본 의향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이에 기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상 호 협 력 의 향 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중국동북삼성한인회는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1. 국제사무소(중국) 설립 및 운영 관련 상호협력
2. 마약류 퇴치 분야 인적, 정보 교류 협력
3. 마약류 퇴치 홍보 캠페인 공동 개최 노력
4. 기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되는 분야



2014년 11월 11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국동북삼성한인회

이사장

田 亦 强

회장

孙 明 强

상호협력의향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중국동북삼성한인회는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제 1 조(목적)

본 의향서는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호 협력 의사를 명문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사업을 통하여 상호 공동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3 조(신의 성실)

양 기관은 신의를 바탕으로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제 4 조(각 당사자의 협력 분야)

본 협의에 의하여 양 기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사무소(중국) 설립 및 운영 관련 상호협력
2. 마약류 퇴치 분야 인적, 정보 교류 협력
3. 마약류 퇴치 홍보 캠페인 공동 개최 노력
4. 기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되는 분야

제 5 조(유효기간)

본 의향서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특별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3년간씩 연장된다.

제 6 조(비밀보호)

양 기관은 본 의향서와 관련하여 상호 교류하는 자료 및 정보를 본 의향서가 정하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제 3자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제 7 조(비용)

본 의향서와 관련하여 유효기간 동안 소요된 당사자의 제반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대방은 그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제 8 조(의향서의 변경)

양 기관은 상호 업무제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본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효력 발생일)

본 의향서의 효력은 양 기관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 2 조(의향서의 보관)

본 의향서는 2 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이에 기명 날인하고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상 호 협 력 의 향 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미국 KPU 대학교는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1. 인재개발 및 양성을 위한 교육 연수
2. 마약류 예방 홍보 활동 상호 협력
3. 학술 (학술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 교류
4. 인력 및 정보의 교류
5. 중독 예방 분야와 관련된 내용 및 프로그램 교류
6. 기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되는 분야

2014 년 11 월 12 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미국 KPU 대학교

이사장

전영주 *Chun*

총장

[Handwritten Signature]

상호협력의향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미국 KPU 대학교는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제 1 조(목적)

본 의향서는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성공적인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호 협력 의사를 명문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교육 사업을 통하여 상호 공동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3 조(신의 성실)

양 기관은 신의를 바탕으로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제 4 조(각 당사자의 협력 분야)

본 협의에 의하여 양 기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인재 개발 및 양성을 위한 교육 연수
2. 마약류 예방 홍보 활동 상호 협력
3. 학술 (학술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 교류
4. 인력 및 정보의 교류
5. 중독 예방분야와 관련된 내용 및 프로그램 교류
6. 기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되는 분야

제 5 조(유효기간)

본 의향서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특별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3년간씩 연장된다.

제 6 조(비밀보호)

양 기관은 본 의향서와 관련하여 상호 교류하는 자료 및 정보를 본 의향서가 정하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제 3자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제 7 조(비용)

본 의향서와 관련하여 유효기간 동안 소요된 당사자의 제반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대방은 그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제 8 조(의향서의 변경)

양 기관은 상호 업무제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본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효력 발생일)

본 의향서의 효력은 양 기관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 2 조(의향서의 보관)

본 의향서는 2 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이에 기명 날인하고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agreement of the following :

- [1] Educational exchange program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2] Co- Operation for Drug abusea against promotion
- [3] The development of a joint academic research.
- [4] Developed human resources exchange program.
- [5] Exchange program for Drug abuse against contents
- [6] Write up detail agreement that will be enter in 2015

November 21, 2014



Kings Park University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President

Chairman



상 호 협 력 의 향 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주)한스에듀는 다음과 같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한다.

1. 마약퇴치 전문 자격과정 개발 운영 등 인재개발 및 양성을 위한 교육 진행
2. 교육기관 홍보대사 구성, 각종 경연과 대회로 마약 퇴치 예방 홍보 활동 및 예방 붐 조성
3. 교재 및 교육 콘텐츠, 교육 체계 연구 개발 보급
4. 스마트콘텐츠(어플, 애니툰, 사이버 콘텐츠 등 ICT분야) 연구개발 보급
5. 국내 대학 등 교육기관 산학 협력 체계 구축 및 대정부 지원 사업
6. 본부 보유 마약퇴치 예방 우수 콘텐츠 해외 수출
7. 700만 재외 동포, 해외 학교 및 다문화 가정, 새터민 마약퇴치 교육 사업
8. 사업 기금 조성을 위한 협력 및 후원인(기관 단체) 구축
9. 약 관련 인문 생활 교양 강좌 문화 대학
10. 해외 유관 기관 방문 마약퇴치 프로그램 체험
11. 기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되는 분야

2014년 12월 1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한스에듀

이사장

대표이사

상호협력의향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주)한스에듀는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의향서는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성공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호 의사를 명문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교육 사업을 통하여 상호 공동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3조(신의 성실)

양 기관은 신의를 바탕으로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제4조(각 당사자의 협력 분야)

본 협의에 의하여 양 기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마약퇴치 전문 자격과정 개발 운영 등 인재개발 및 양성을 위한 교육 진행
2. 교육기관 홍보대사 구성, 각종 경연과 대회로 마약 퇴치 예방 홍보 활동 및 예방 붐 조성
3. 교재 및 교육 콘텐츠, 교육 체계 연구 개발 보급
4. 스마트콘텐츠(어플, 애니툰, 사이버 콘텐츠 등 ICT분야) 연구개발 보급
5. 국내 대학 등 교육기관 산학 협력 체계 구축 및 대정부 지원 사업
6. 본부 보유 마약퇴치 예방 우수 콘텐츠 해외 수출
7. 700만 채의 동포, 해외 학교 및 다문화 가정, 새터민 마약퇴치 교육 사업
8. 사업 기금 조성을 위한 협력 및 후원인(기관 단체) 구축
9. 약 관련 인문 생활 교양 강좌 문화 대학
10. 해외 유관 기관 방문 마약퇴치 프로그램 체험
11. 기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되는 분야

제5조(유효기간)

본 의향서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특별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3년간씩 연장된다.

제6조(비밀보호)

양 기관은 본 의향서와 관련하여 상호 교류하는 자료 및 정보를 본 의향서가 정하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제7조(비용)

본 의향서와 관련하여 유효기간 동안 소요된 당사자의 제반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대방은 그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제8조(의향서의 변경)

양 기관은 상호 업무제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본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효력 발생일)

본 의향서의 효력은 양 기관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2조(의향서의 보관)

본 의향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이에 기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끝.

마약류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상 호 협 력 의 향 서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노사케미컬·아주대학교 생체이용률조절연구실(이하 'BACL')·대원제약은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제 1 조 (목적) 본 의향서는 마약류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미래 전략방안으로 4자간 상호 연구협력 의사를 명문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기본원칙) 4자 기관은 연구협력을 통하여 상호 공동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3 조 (신의성실) 4자 기관은 신의를 바탕으로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제 4 조 (각 당사자의 협력 분야) 본 협의에 의하여 4자기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연구개발과 공익적 역할을 위한 4자 협의체의 중심기관이 된다.
2. 노사케미컬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신제품 연구 개발을 위하여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지속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한다.
3. BACL·대원제약은 마약류 오·남용제제를 포함한 신제품 개발에 공동으로 협력한다.
4. BACL·대원제약은 마약류 오·남용제제의 연구개발에 있어 국책연구과제에 공동으로 참여하며 BACL이 중심이 된 글로벌개량신약연구개발 센터를 통한 수출 사업에도 적극 협력한다.
5.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대원제약은 BACL로부터 개발되는 마약류 오·남용방지 제제의 국내·외 시판 및 수출에 있어서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공익적인 부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상호 협약한다.
6. 대원제약은 기존제품 및 신제품의 연구개발과 생산에 있어 표준품 및 원료 마약의 구입 시 최우선적으로 Firm Offer를 노사케미컬에 의뢰한다. (단, 노사케미컬은 국가 정책에 부응하여 국제통상 가격(실비)으로 제공한다.)

제 5 조 (유효기간) 본 의향서의 유효기간은 4자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3년간
으로 하고, 특별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3년간씩 연장된다.

제 6 조(비밀보호) 4자 기관은 본 의향서와 관련하여 상호 교류하는 자료 및 정보를
본 의향서가 정하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제 7 조(비용) 본 의향서와 관련하여 유효기간 동안 소요된 당사자의 제반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대방은 그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제 8 조(의향서의 변경) 4자 기관은 상호 업무제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본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효력 발생일) 본 의향서의 효력은 4자가 서명 날인한날로부터 발생한다.

제 2 조(비밀보호) 본 의향서는 4부를 작성하여 4자 기관이 이에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12월 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Chem

노사케미컬

대표이사

정원호



생체이용률조절연구실

교수

김보진

Daewon 대원제약|주|

부회장

이승우